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35,978,122	10,079,344
일반회계	301,557,423	9,046,723
특별회계	34,420,699	1,032,621
기타특별회계	34,420,699	1,032,621
상수도사업	1,704,122	51,124
하수도사업	1,462,458	43,874
수질개선	5,698,825	170,965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44,050	13,322
의료급여기금	556,958	16,709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506,794	15,204
소득특화사업	4,906,014	147,180
농공단지조성사업	2,243,791	67,314
공영개발사업	5,999,700	179,991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897,987	326,940

제 2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626,286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

제 4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,7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